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할당) ①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단,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버전 6 주소(이하 "IPv6주소"라 한다.)는 관리대행자 또는 인터넷 교환망(Internet eXchange) 운영자만 할당신청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 망 구성도

나. IP주소 할당현황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라. 장비 구매 내역서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한다. 단, 신청인이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신청할 경우 진흥원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할당정보 변경) ①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관정보변경) ①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

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회수) ①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이전) ①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수수료) ①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등록수수료) ①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선정취소) ①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관리대행업무 이전) ①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6.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구 분	IPv4주소	IPv6주소
관리대행자	/21	/32
독립사용자	/24	-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24	/48

※ 참고 : IPv4주소 대역별 최소 할당 규모

IPv4주소 대역	최소 할당 규모	/24 개수
58.0.0.0 /8	/21	8
59.0.0.0 /8	/20	16
60.0.0.0 /8	/20	16
61.0.0.0 /8	/20	16
121.0.0.0 /8	/21	8
122.0.0.0 /8	/21	8
123.0.0.0 /8	/21	8
124.0.0.0 /8	/20	16
125.0.0.0 /8	/20	16
126.0.0.0 /8	/20	16
128.0.0.0 /8	/16	256
129.0.0.0 /8	/16	256
134.0.0.0 /8	/16	256
137.0.0.0 /8	/16	256
141.0.0.0 /8	/16	256
143.0.0.0 /8	/16	256
147.0.0.0 /8	/16	256
150.0.0.0 /8	/16	256
152.0.0.0 /8	/16	256
154.0.0.0 /8	/16	256
155.0.0.0 /8	/16	256
156.0.0.0 /8	/16	256
157.0.0.0 /8	/16	256
158.0.0.0 /8	/16	256
161.0.0.0 /8	/16	256
163.0.0.0 /8	/16	256
164.0.0.0 /8	/16	256
165.0.0.0 /8	/16	256
166.0.0.0 /8	/16	256
168.0.0.0 /8	/16	256
169.0.0.0 /8	/16	256
202.0.0.0 /8	/24	1
203.0.0.0 /8	/24	1
210.0.0.0 /8	/20	16
211.0.0.0 /8	/20	16
218.0.0.0 /8	/20	16
219.0.0.0 /8	/20	16
220.0.0.0 /8	/20	16
221.0.0.0 /8	/20	16
222.0.0.0 /8	/20	16

[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IP주소 할당통보서

한국인터넷진흥원(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은
_____년 __월 __일자로 _____에게 아래의 IP주소를 할당합니다.

IP주소 : _____ - _____

o 상기 IP주소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준칙 및 관리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o 관리대행자는 상기 IP주소가 공공 인터넷주소자원이므로 효율적으로 할당하여야 합니다.

o 독립사용자는 상기 IP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재할당하여서는 안됩니다.

o IP주소의 할당정보 등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며, 할당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NIDA에 정보변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hois.nida.or.kr 또는 whois -h whois.nida.or.kr [IP주소]

o 문의처
- 02-2186-4500, hostmaster@nida.or.kr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NIDA Hostmaster

[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IP주소	신규할당승인	□	정보변경	□	신청서
	추가할당승인	□	할당취소	□	
	인프라신규할당승인	□	반납	□	
	인프라추가할당승인	□			
	IPv4주소	□	IPv6주소	□	

1. 네트워크 정보		2. IP주소 사용기관 정보	
IP주소:		한글기관명:	
네트워크명:		한글시도명:	
기관고유번호:		한글주소:	
네트워크분류:		우편번호:	
인터넷서비스분류:		영문기관명:	
이용기관분류:		영문시도명:	
서비스지역:		영문주소:	
연결ISP명:			
연결날짜:			

3.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 정보(Admin-c)		4. 네트워크 관리 실무자 정보(Tech-c)	
한글이름:		한글이름:	
한글기관명:		한글기관명:	
한글시도명:		한글시도명:	
한글주소:		한글주소:	
우편번호:		우편번호:	
영문이름:		영문이름:	
영문기관명:		영문기관명:	
영문시도명:		영문시도명:	
영문주소:		영문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대표번호:		대표번호: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5. 과거 할당받은 IP주소의 사용현황		6. IP주소 할당신청 세부내역	
old-network:		network-plan:	
old-total-subnet:		network-plan:	
old-total-host:		total-subnet:	
old-comment:		total-host:	

7. IX 또는 Multi-homing 현황	
연결 AS번호 현황:	
IX 연결 회원 현황:	
IX 연결 정책:	

8. 추가사항(comment):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관리대행자	선정	□	신청서
	선정취소	□	
	기관정보변경	□	

1. 기관 정보				2. 대표자 정보	
한글기관명:				한글성명:	
한글서비스명:				직위:	
한글주소:				전화 번호:	
영문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영문서비스명:				3. 총괄책임자 정보	
영문주소:				한글성명:	
홈페이지 주소:				부서:	
사업자등록번호:				직위:	
통신사업자구분:	□기간	□부가	□별정	전화 번호:	
전기통신역무 종류:				전자우편주소:	
전기통신역무 내용:				4. 네임서버 정보	
전기통신역무 내용:				1차 NS 네임서버명	
전기통신역무 내용:				IP주소	
전기통신역무 내용:				2차 NS 네임서버명	
사업 구역:				IP주소	

5. IP주소 책임자 정보		6. IP주소 담당자 정보		7. DNS 담당자 정보		8. WHOIS 담당자 정보	
한글성명:		한글성명:		한글성명:		한글성명:	
영문성명:		영문성명:		영문성명:		영문성명:	
직위:		직위:		직위:		직위:	
부서:		부서:		부서:		부서: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전화 번호:	
팩스 번호:		팩스 번호:		팩스 번호: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8. 선정해지 사유

9. 구비서류	
선정신청경우	기관정보변경신청경우
① 사업자등록증 ② 기간·부가·별정통신사업자 허가·등록증 등 ③ 이행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④ 사업계획서 ⑤ 이용약관 ⑥ 망연동확인서 및 망 구성도 ⑦ IP주소 변경계획 ⑧ 향후 1년간 IP주소 사용계획	① 사업자등록증 ②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IP주소 이전신청서

양도인	기 관 명(한글)	
	영문서비스명 또는 네트워크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명	(인)
양수인	기 관 명(한글)	
	영문서비스명 또는 네트워크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명	(인)
이전대상		
이전사유		
이전계획		
기타사항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IP주소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발급번호 0000년도-0000호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명/네트워크명	

청 구 내 용

대상	관리대행자 or 독립사용자		
구분	(등록수수료) or (년도 분담금) or (등록수수료 + 년도 분담금)		
기준일	년 월 일	적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 구 금 액			**원**

IPv4			**IPv6**	
/32 개수①			한계값①	
기준금액②	/32당 33원		기준금액②	한계값 1당 3.3원
할당일	년 월 일		할당일	년 월 일
사용기간③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기간	최초할당 후 반납시까지
청구금액 {① × ②× (③/365일)}			**청구금액 (① × ②)**	
원			**원**	

총 청구금액	원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분담금/등록수수료/IP주소수수료)를(을)청구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인)

입금정보	입금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입금방법	
	납부기한		입금자명	
기타사항	o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o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IP주소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o 연체료는 연 0.026로 월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발급번호 기존번호 - 연체료01

연체료 청구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네트워크 이름	

청 구 내 용

구분	청구일	청구금액①	납부기한
(분담금/수수료/분담금 및 수수료)	년 월 일	원	년 월 일

연체기간 : ()개월	**연 체 료** (① × 0.026 × 연체개월수/12)
	원②
총 청구금액	**(① + ②) 원**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 및 수수료의 연체료를 청구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인)

입금 정보	입금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입금자명	영문서비스명
기타사항	o 연체료는 납부월까지 월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o 년 월 일까지 미납 시, IP주소가 회수 될 수 있습니다.			

※ 연체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기 관 명(국문) :

서비스명(영문) :

대 표 자 명 :

주 소 :

본 관리대행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하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준칙 및 관계된 관리세칙 모두를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양도인	기 관 명(한글)	
	서비스명(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명	(인)
양수인	기 관 명(한글)	
	서비스명(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명	(인)
이전사유		
이전계획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